

대학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고 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 대학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 15., 2006. 3. 1.)

제2조(대학원의 종류 등)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의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국제전문인을 양성하는 대학원
2.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전문대학원: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특수대학원은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정책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 예술대학원, 스포츠융합과학대학원, 유아교육대학원, 글로벌창업대학원을 설치 운영한다.(개정 2007. 3. 1., 2008. 3. 1., 2010. 3. 1., 2014. 3. 1., 2014. 9. 1., 2022. 3. 1., 2024. 3. 1.)

③ 교육목표: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 2. 7., 2004. 3. 1., 2006. 3. 1., 2007. 3. 1., 2008. 3. 1., 2010. 3. 1., 2014. 3. 1., 2014. 9. 1., 2022. 3. 1., 2024. 3. 1.)

1. 일반대학원: 창의적 연구능력과 도덕적 품성을 지니고 국제적 전문성을 추구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2. 교육대학원: 국제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교수기술을 갖춘 교육자의 재교육 및 양성을 목표로 한다.
3. 경영대학원: 경영 및 무역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교수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4. 정책대학원: 국가발전 및 공공정책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교수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5. 여성학대학원
6. 통·번역대학원
7. 연합신학대학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신학의 이론과 목회의 실재를 접목시켜 현장감 있는 신학을 연구하고 한국 교회의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8. 산업기술대학원
9. 예술대학원: 예술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하고, 탁월한 실기 능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10. 디자인대학원
11. 스포츠융합과학대학원: 스포츠 과학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지식과 융합적 사고 역량을 함양하고, 융합 기술의 과학적 적용을 통해 스포츠 산업 및 건강관리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한다.
12. 의료경영대학원

13. 유아교육대학원: 변화하는 사회와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유아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안목과 지식 및 실천적 능력을 갖춘 유아교육 전문가와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4. 융합공학대학원

15. 글로벌창업대학원: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교수함으로써 기술 창업가와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3조(학위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두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통합한 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과 박사 후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3. 1. 15.)

②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개정 2003. 1. 15.)

③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특별과정을 둘 수 있으며, 내규 또는 교류협정 등으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9. 1., 2024. 9. 1.)

1. 학과 간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

2. 집중이수제과정

3. 복수 또는 공동학위과정

④ 일반대학원에는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이 상호 연계된 학·석사연계과정을 둘 수 있다.(신설 2018. 4. 17.)

제2장 대학원 및 학과(전공)의 설치·폐지와 입학정원

제4조(학과와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에 설치되는 각 과정의 학과(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 3. 1., 2008. 3. 1., 2008. 6. 25., 2009. 3. 1., 2009. 4. 29., 2010. 3. 1., 2010. 9. 13., 2011. 3. 1., 2012. 3. 1., 2013. 3. 1., 2014. 3. 1., 2014. 9. 1., 2014. 12. 29., 2015. 3. 1., 2015. 9. 1., 2016. 9. 1., 2017. 4. 28., 2018. 3. 1., 2018. 10. 17.)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 3. 1.)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4조의2(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또는 전공(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0. 3. 1.)

②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학위명 등은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과 같다.(신설 2010. 3. 1., 개정 2013. 3. 1., 2019. 9. 1.)

③ 계약학과의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운영경비,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0. 3. 1., 개정 2018. 9. 1.,)

제5조(학과의 설치·폐지) ① 각 대학원은 사회적·학문적 수요를 반영하여 학과(전공)를 신설 및 폐

지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조 개정 2018. 10. 17.)

② 각 대학원 내 개설 학과(전공) 중 대학정보공시 기준으로 학년도별 신입생 5명 미만 이 연속 2회인 경우 해당 학과의 신입생 모집 중지와 학과 폐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의한다.(개정 2025. 3. 1.)

③ 모집중지된 학과(전공)의 학과장(전공책임교수) 직무는 각 대학원장이 담당한다.(신설 2019. 3. 1.)

제5조의2(대학원의 설치·폐지) ① 사회적·학문적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대학원을 신설 및 폐지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조 신설 2018. 10. 17.)

② 사회적·학문적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학생모집이 어려운 경우 해당 특수대학원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의한다.

③ 폐원한 특수대학원의 수료생이 수료자 등록할 경우와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 일반대학원 유사학과(전공)로 학적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5. 9. 1.)

제3장 입 학

제6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4. 3. 1.)

제7조(입학자격) ①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15., 2004. 3. 1., 2006. 3. 1., 2015. 9. 1., 2021. 9. 1.)

1. 석사학위과정, 통합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제적 또는 자퇴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개정 2004. 3. 1.)

③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제8조(입학제한)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입학할 수 있으나 그 재학기간은 휴직기간으로 처리한다.(개정 2003. 1. 15.)

제9조(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별, 과정별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3. 1. 15.)

② 전형자료는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로 면접고사, 구술고사, 필답고사, 실기고사, 대학 및 대학원 성적, 면학계획서 중 필요한 성적 및 자료와 기타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한다.(신설 2003. 1. 15.)

③ 당해 연도의 구체적인 전형방법과 선발방법은 모집요강에 명시하되 전형실시 최소 1개월 전까지 공고한다.(신설 2003. 1. 15.)

- ④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형방법에 의하여 입학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04. 3. 1.)
- ⑤ 교육부 장관의 위탁생 추천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형방법에 의하여 입학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04. 3. 1., 개정 2009. 3. 1.)

제4장 등록 및 학적

제10조(등록) ① 학생은 각 대학원 과정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학점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 3. 1., 개정 2019. 3. 1.)

제11조(수료자 등록 및 수료자 연구 등록) ① 수료자라 함은 각 과정에 필요한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을 정규등록하고 이수하여야 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3. 1. 15.)

② 수료자 중 학위 취득을 위해 교과목을 이수하는 자는 수료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거나 각종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수료자 연구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 2014. 3. 1., 2019. 9. 1.)

③ (삭제 2003. 1. 15.)

제12조(휴학) ① 휴학을 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휴학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 1. 15.)

②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 3. 1.)

제13조(복학) 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15., 2009. 3. 1.)

②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 3. 1.)

제14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
2. 등록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3. 기타 대학원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제적된 자
4. 재학연한 내에 해당학위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제15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이하 “학과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5. 20.)

제16조(재입학) (삭제 2003. 1. 15.)

제17조(편입학) (삭제 2003. 1. 15.)

제5장 학점,수업연한,수료,전과,교육과정

제18조(학점인정 일수) 한 학기 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하여야 수강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한다.(개정 2003. 1. 15., 2017. 9. 1.)

제19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F	69이하	0

② 합격, 불합격만을 표시할 교과목은 P(합격), F(불합격)로 표시하고 점수, 평점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신설 2003. 1. 15.)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에 제시한 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과목의 성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EDWARD 시스템에 성적을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3. 1.)

제20조(이수단위 및 인정평점)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과목별 이수인정 학점은 C학점 이상, 전과목 평점평균은 3.0(등급 B학점)이상 되어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01. 2. 7.)

제21조(학점인정) ① 재입학한 학생의 기 취득학점은 인정한다.(개정 2003. 1. 15.)

② 편입학한 학생이 출신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목과 유사교과목의 학점이 있을 경우에는 학과교수회의에서 심사하여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③ (삭제 2019. 9. 1.)

④ 우리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 전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현재 학위과정에 상응하는 동일 교과목 또는 유사 교과목에 한하여 학과교수회의에서 심사하여 성적이 B학점 이상일 경우에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통합과정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6. 3. 1., 2009. 3. 1., 2022. 3. 1.)

⑤ 우리 대학교와 협정관계에 있는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동일 교과목 또는 유사 교과목에 한하여 학과교수회의에서 심사하여 성적이 B학점 이상일 경우에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통합과정은 3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9. 3. 1., 개정 2018. 10. 17., 2021. 9. 1.)

⑥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학 전공과목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4. 5. 1., 개정 2009. 3. 1., 2020. 3. 1.)

⑦ (삭제 2019. 3. 1.)

⑧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여섯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진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석사학위과정 개설과목 중에서 총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한 학점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과정의 연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0. 3. 1., 개정 2017. 9. 1., 2020. 3. 1.)

⑨ 우리 대학교와 협력관계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협력사항에 따라 동일 교과목 또는 유사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9. 9. 1.)

제21조의2(수업) 일반대학원은 주간에 수업을 하고 특수대학원은 야간에 수업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야간 병행수업, 주말수업, 집중수업 등과 같이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조 신설 2018. 10. 17.)

제22조(수업연한) ①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3. 1., 2008. 3. 1., 2014. 3. 1., 2014. 9. 1., 2018. 10. 17., 2021. 3. 1., 2022. 3. 1., 2024. 3. 1., 2026. 9. 1.)

1. 일반대학원

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2년

나. 통합과정: 4년

다. 학·석사연계과정: 1년

2. 특수대학원

가.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MBA학과), 정책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 유아교육대학원: 2년 6개월

나. 경영대학원(GMBA학과), 예술대학원, 스포츠융합과학대학원, 글로벌창업대학원: 2년

② 학위수여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0. 3. 1., 2018. 10. 17., 2021. 3. 1., 2024. 9. 1.)

1. 석사(학·석사연계과정 제외) 및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2. 통합과정: 1년 이내

3. 석사학위과정 중 매 학년도 4학기 이상을 운영하는 학과(전공): 1년 이내

4. 복수학위과정: 1년 이내

③ 일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3년, 박사과정 5년, 통합과정 6년으로 하며,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은 5년으로 한다.

④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 재적기간 중 취득한 전공학점을 통산하여 재산정한다.(개정 2001. 2. 7.)

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2018. 10. 17.)

제23조(학년도, 학기 등) ① 대학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22. 3. 1.)

③ 학기는 매 학년도 두 학기 이상으로 정한다.(신설 2017. 9. 1.)

④ 제3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과(전공)별,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신설 2017. 9. 1.)

제23조의2(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하계 및 동계 방학, 창립기념일(5월 20일), 법정 공휴일로 한다.(조 신설 2022. 3. 1.)

② 비상사태, 재해, 기타 필요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임시휴업과 그 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제24조(이수학점) ①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5. 20., 2008. 3. 1., 2010. 3. 1., 2011. 3. 1., 2012. 9. 1., 2014. 3. 1., 2017. 9. 1., 2019. 3. 1., 2020. 9. 1.)

1. 석사학위과정: 24학점(교육대학원은 교직과목 4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부전공자 제외))

2. 박사학위과정: 36학점

3. 통합과정: 60학점

② 학점은 전공학점과 선택 또는 교직학점으로 한다.(개정 2004. 5. 20.)

- ③ 각 과정의 학생은 교과학점 이외에 학위취득을 위해 연구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④ 우리 대학교 각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정관계에 있는 국내·외 다른 대학교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2의 범위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 5. 20.)
- ⑤ 각 과정의 하위과정 학생은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관계없이 각 대학원(학사는 석사과정, 석사는 박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상위과정에 진학할 경우 그 취득학점 중 6학점까지 수료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⑥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입학생 중 비동일계 출신자의 경우에는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 5. 20., 2008. 6. 25.)
- ⑦ 특수대학원의 선수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 5. 20.)

제25조(수강학점) ① 각 대학원의 학기별 수강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내외 다른 대학교와의 교류협정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학과 설치·운영 협정을 맺고 협약내용에 따라 정해진 강좌를 개설할 경우 해당 학생은 해당 강좌의 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6. 3. 1., 2008. 3. 1., 2010. 3. 1., 2014. 9. 1., 2019. 3. 1., 2020. 9. 1., 2022. 3. 1., 2024. 3. 1., 2024. 9. 1., 2026. 9. 1.)

1. 일반대학원: 9학점 이내(학·석사연계과정은 12학점 이내)

2. 특수대학원

가.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MBA학과), 정책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 유아교육대학원: 6학점 이내

나. 경영대학원(GMBA학과), 예술대학원, 스포츠융합과학대학원, 글로벌창업대학원: 9학점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과정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생의 수강능력에 따라 3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4. 5. 20.)

③ 규정된 학점 외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매학기 3학점까지 초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초과 신청한 학점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 5. 20.)

④ 교육대학원 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매학기 4학점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4. 5. 20., 2016. 9. 1.)

⑤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가 가능한 특수대학원 학생 중 학위청구논문 대체신청서 제출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3학점 이내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4. 5. 20., 개정 2024. 3. 1., 2024. 3. 1.)

⑥ 타 학과 및 타 대학원 교과목 수강신청의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 5. 20., 2017. 3. 1., 2019. 3. 1.)

제26조(전공변경) 전공변경은 동일학과 내에 한하고, 각 과정의 둘째 학기 초에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새로운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4. 5. 20., 2013. 9. 1., 2017. 9. 1.)

제27조(수료시기)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해당학기 학위수여일로 한다.(개정 2004. 5. 20.)

제28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대학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조 개정 2017. 9. 1.)

② 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교과별 수업일수는 대학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9조(교육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 3. 1.)

제6장 자격시험

제30조(자격시험 종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졸업시험으로 한다.(개정 2016. 9. 1.)

제31조(자격시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 3. 1., 2016. 9. 1.)

제7장 학위 청구논문

제32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① 전공교과목(교직교과목 포함) 12학점 이상 취득자(통상적으로 3개 학기 이상 등록자.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등록자)는 학위청구논문 발표 최소 한 학기 이전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을 경유하여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15., 2010. 9. 13., 2017. 9. 1., 2026. 9. 1.)

②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한 학기(통상적으로 셋째 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두 학기(통상적으로 셋째, 넷째 학기) 이상 지도교수로부터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연구 지도를 받아야 하며,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15., 2017. 9. 1.)

③ 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 3. 1.)

제33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및 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3. 1. 15., 2017. 3. 1.)

1.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3.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갖춘 자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각 대학원이 지정하는 논문심사위원이 심사 및 구술고사를 실시하며,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석사학위과정은 3명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 1. 15.)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 3. 1.)

제34조(학위논문 심사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 논문 또는 박사학위 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학위수여

제35조(학위수여) ① 각 과정별 제37조의 학위수여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4. 5. 20.)

② 통합과정 학생이 제37조의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1. 9. 1.)

③ 국내외 다른 대학(교)와 교류협약에 의거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학위는 외국대학교와 교류협약에 의한다.(개정 2005. 6. 15.)

제36조(수여학위명) 과정별 수여학위명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세부전공별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7. 3. 1., 2008. 3. 1., 2008. 10. 21., 2009. 3. 1., 2009. 4. 29., 2010. 3. 1., 2010. 9. 13., 2011. 3. 1., 2011. 9. 1., 2013. 3. 1., 2014. 3. 1., 2014. 9. 1., 2014. 12. 29., 2015. 3. 1., 2015. 9. 1., 2016. 9. 1., 2017. 4. 28., 2018. 3. 1., 2018. 9. 1., 2018. 10. 17.)

제37조(학위수여 자격) 석·박사학위수여 자격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개정 2004. 5. 20., 2008. 3. 1., 2010. 3. 1., 2011. 3. 1., 2014. 3. 1., 2017. 9. 1., 2019. 3. 1., 2020. 9. 1.)

1. 석사학위과정 24학점(교육대학원은 교직과목 4학점 포함) 이상,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 60학점 이상 취득자
2.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3.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석사학위과정은 한 학기, 박사학위과정은 두 학기 이상의 연구지도를 받고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한 자
5.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체를 인정받은 자
6. 학위수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38조(명예박사학위) ① 명예박사학위수여 자격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1.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
2.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을 나타낸 자
3. 대학원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② (삭제 2004. 4. 1.)

③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수여한다.(신설 2003. 1. 15.)

제39조(학위수여자 사정) (삭제 2003. 1. 15.)

제40조(학위수여 및 구분) 본 대학원에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 3. 1., 2001. 2. 7.)

1. 일반대학원 : 학술학위
2. 특수대학원 : 전문학위
3. 전문대학원 : 전문학위
4. 명예박사학위 : 학술 학위에 준함. 다만 전문대학원에서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1조(박사학위 수여) (삭제 2003. 1. 15.)

제42조(명예박사학위 수여) (삭제 2003. 1. 15.)

제43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한다. 다만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정규학위 수여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개정 2003. 1. 15.)

제44조(학위기 양식) 학위기는 다음에 따라 작성 및 시행한다.(개정 2008. 3. 1.)

1. 학술학위(석사) - 별지1
2. 전문학위(석사) - 별지2
3. 학술학위(박사) - 별지3
4. 명예박사학위 - 별지4

제45조(학위수여 취소)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3. 1. 15., 2015. 3. 1., 2018. 10. 17.)

제46조(학위복장 규정) 석사, 박사 학위복의 학위 후드 색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3. 1., 2009. 3. 1., 2010. 3. 1., 2020. 3. 1.)

제9장 연구생 및 공개강좌

제47조(연구생 등) ① 각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연구생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 1. 15.)

② (삭제 2004. 3. 1.)

③ (삭제 2004. 3. 1.)

제48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생으로서 그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에 관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9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개강좌는 대학 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03. 1. 15.)

② 공개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3. 1. 15.)

③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소요되는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 1. 15.)

제10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50조(학칙준수) 학생은 본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고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

제51조(취업제한) (삭제 2003. 1. 15.)

제52조(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하거나 가계가 곤란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9. 1.)

제53조(징계)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심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하고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1. 15.)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적

제11장 직 제

제54조(대학원장) 각 대학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5조(조직) ① 각 대학원에는 부원장을 둘 수 있다.(신설 2009. 3. 1., 2016. 10. 17.)

② 각 대학원에는 원장 외에 각 과정의 학과마다 교원(조교는 제외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3. 1.)

③ 학과(전공)별 소속교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공영역 교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01. 2. 7., 개정 2009. 3. 1.)

제56조(학과장 또는 책임교수) ① 각 학과(전공)에는 학과장(책임교수)을 두며 학과장은 그 학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6. 3. 1., 2019. 9. 1.)

② 제3조제3항의 특별과정에 학과장 또는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06. 3. 1., 2019. 9. 1.)

제12장 위 원 회

제57조(위원회) ① 전체 대학원의 학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개정 2003. 1. 15.)

② 각 대학원에는 학사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일반대학원은 별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대학원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심의한다.(개정 2003. 1. 15., 2009. 3. 1., 2016. 10. 17., 2025. 4. 17.)

제58조(구성 및 임기) ①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하며,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개정 2003. 1. 15.)

②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하며, 해당 대학원의 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개정 2003. 1. 15., 2009. 3. 1., 2017. 3. 1.)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3. 1. 15.)

제59조(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①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3. 1. 15., 2015. 3. 1., 2017. 9. 1., 2018. 10. 17.)

1. 대학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입학·학위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학과 및 전공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4.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 학위의 전공 영역에 관한 사항
7.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8. 명예박사학위 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학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 제5호, 제7호에서 각 대학원에 해당되는 사항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다만 전체 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에서 조정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04. 5. 20., 2009. 3. 1., 2017. 3. 1.)

제59조의2(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각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3. 1. 15., 2009. 3. 1., 2017. 3. 1., 2017. 9. 1.)

1. 제59조제2항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각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학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0조(회의 및 사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3. 1. 15.)

② 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에서 관장하고, 각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해당 대학원에서 관장한다.(개정 2003. 1. 15., 2009. 3. 1., 2017. 3. 1.)

제13장 보 칙

제61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개정 2003. 1. 15.)

제62조(시행세칙) 우리 대학원 학칙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3. 1. 15., 2020. 3. 1.)

제63조(학칙개정) 학칙개정안은 대학원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신설 2004. 3. 1.)

부 칙

1. 이 학칙은 196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는 1977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제3조는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학칙은 1988년 9월부터 시행한다.
9.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0조 제3항의 시행은 198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1981~1983학년도 박사과정
에 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 학칙에 불구하고 본 학칙 제19조를 적용한다.
10.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학칙은 199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학칙은 199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제27조 제2항 단서의 병역의무 복무기간 제외
규정은 이 학칙 시행이전 수료자에게도 적용한다.
15. 이 학칙은 199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학칙은 199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제27조 제2항의 개정당시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이 경과한 자는 외국어 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8. 이 학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제22조(수업연한)는 1998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19.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종전 각 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규정은 각각 폐지한다.

②학칙 제4조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일어일문학과, 일본학과를 일본학과로 통합 운영하며,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일본학과, 관광경영학과, 행정학과, 기계공학과를, 교육대학원에 사서교육전공을, 정책대학원에 법무행정학과를 신설 운영한다.

③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전자계산학과에 재학중인(휴학생 포함) 학생은 이 개정학칙에 의한 대학원 가족복지학과, 컴퓨터공학과에 재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일어일문학과 재학(휴학생 포함)중인 학생이 졸업시 학과 명칭은 종전 학칙에 의한다. (개정 2000. 3. 1.)

④본 학칙의 적용시 미비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20. 이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경영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예술학과를 신설 운영한다. (개정 2000. 3. 1.)

21.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특수대학원에 의료경영대학원을 신설 운영한다.

②학칙 제5조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재료공학과를, 교육대학원에 환경교육전공을 신설 운영한다. 교육대학원 환경교육전공의 지원자격은 현직 교직원에 한한다.

③목회신학대학원을 신학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22. 이 학칙은 2001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①특수대학원에 유아교육대학원을 신설 운영한다.

②학칙 제5조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신문방송학과, 자동차공학과를, 석사과정에 경찰행정학과, 자동차공학과, 전자공학과를 신설운영한다.

③교육대학원 교육철학전공 및 산업교육전공을, 경영대학원 무역학전공을, 디자인대학원 가구디자인전공, 실내디자인전공 및 제품디자인전공을, 산업기술대학원 자동차시스템공학과 및 환경공학과를, 국제학대학원 아세아학과, 미주학과를 각각 폐지하고, 정책대학원 법무행정학과를 법무학과로, 산업기술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를 컴퓨터공학과로, 생산안전공학과를 산업안전공학과로 각각 명칭 변경한다.(변경 2001. 8. 17.)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폐지된 학과(전공)의 재학생 및 수료생이 졸업시 학위명 표기방법은 이 개정학칙에 준하여 교육대학원 교육철학전공은 교육학석사(교육철학), 산업교육전공은 교육학석사(산업교육)으로 경영대학원 무역학전공은 경영학석사(무역학)으로, 디자인대학원 가구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석사(가구), 실내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석사(실내), 제품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석사(제품), 산업기술대학원 자동차시스템공학과는 공학석사(자동차시스템공학), 환경공학과는 공학석사(환경공학)로 국제학대학원 아세아학과 지역학전공은 문학석사(일본지역학, 중국지역학), 통상학전공은 경영학석사(일본통상학, 중국통상학)로 미주학과 통상학전공은 경영학석사(미주통상학)로 표기한다.

23. 이 학칙은 200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①이 개정학칙 시행으로 종전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폐지한다.

②이 개정학칙 시행이전 재학생 및 수료생에 대한 학위논문 제출은 종전 학칙에 불구하고 개정학칙에 의한다.

24. 이 개정학칙은 200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개정학칙은 2002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교육대학원 화학교육전공과 생물교육전공은 공통과학교육전공으로 전공통합하고 사회교육전공은 평생교육전공으로 명칭 변경한다.

②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위 제1항의 전공통합 및 명칭 변경된 전공의 재학생 및 수료생에 대한 졸업 시 학위명 표기방법은 종전 학칙에 의한다.

26. 이 개정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이 개정학칙은 200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8. 이 개정학칙은 200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①학칙 제5조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사회복지학과를, 박사과정에 소비자정보학과, 경찰행정학과, 음악학과, 미술학과를 신설하고, 박사과정의 예술학과를 폐지한다.(2003. 3.1)

②예술학과 재학생(수료생 포함)은 전공에 따라 음악학과 또는 미술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다만, 예술학과로의 소속을 원하는 학생은 변경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종전 각 특수대학원에서 설치 운영하던 운영위원회는 폐지한다.

29. 이 개정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①학칙 제5조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유아교육학과를, 박사과정에 유아교육학과를 신설하고 미술학과를 미술·디자인학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한다.

②산업기술대학원은 폐원하고 디자인대학원은 예술·디자인대학원으로 통합하며 경영대학원에 국제통상학과, 테크노경영학과를, 예술·디자인대학원에 디자인학과를 신설하고 국제학대학원의 국제통상전공을 폐과한다.

③신학대학원의 명칭을 연합신학대학원으로 변경하며 신학과를 목회신학과로, 목회학과를 실천목회학과로 변경한다.

④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폐지된 특수대학원 및 학과(전공)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수료생에 대한 졸업시 학위명 표기방법은 종전 학칙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0. 이 개정학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 이 개정학칙은 200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2. 이 개정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교육대학원 공업교육전공과 예술·디자인대학원 광고전공을 폐지한다.

②교육대학원 교육과정 및 평가전공, 영양교육전공과 디자인대학원 애니메이션전공을 신설하고,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 전공을 윤리교육전공으로,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신학과를 신학과로, 실천목회학과를 목회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③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신설된 교육과정 및 평가전공과 영양교육전공의 학위명 표기방법은 이 개정학칙에 준하여 교육학석사(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학석사(영양 교육)로 하며, 연합신학대학원 신학과는 신학석사(신학), 목회학과는 신학석사(목회학)로 하며, 예술·디자인대학원 애니메이션전공은 미술학석사(애니메이션)로 표기한다. 다만,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의 재학생 및 수료생의 졸업 시 학위명 표기방법은 이 개정학칙에 준하여 교육학석사

(윤리교육)로하고, 폐지된 교육대학원 공업교육전공과 예술·디자인대학원 광고전공의 제적생이 재입학 하여 졸업시 학위명 표기방법은 종전 학칙에 준한다.

④대학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예술·디자인대학원의 입학정원에서 5명을 교육대학원으로 배정하여 교육대학원 28개 전공 입학정원 272명으로 한다.

⑤제36조 별표2의 변경 대학원 수여 학위명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이 개정학칙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4. 이 개정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전 대학원 또는 학과, 학위 명칭을 표기할 수 있다.

35. 이 개정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폐지된 독어교육전공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수료생의 졸업시 수여학위는 종전 학칙에 의한다.

36. 이 개정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경과조치) ①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폐지된 정책대학원 학과(전공) 재학생(휴학생 포함) 수료생에 대한 졸업 시 수여 학위명 표기는 종전 학칙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단, 정책대학원 정책학과에 경찰행정전공과 안보정책전공을 신설하여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 이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이 개정학칙에도 불구하고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학과(전공)승인을 받은 예술·디자인대학원의 디자인학과 재학(적)생은 예술대학원 디자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폐지와 변경된 학과(전공)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수료생에 대한 졸업시 학위명 표기 방법은 종전학칙에 의한다.

38. 이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폐지되는 스포츠산업대학원 태권도교육프로그램학과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수료생에 대한 졸업 시 수여학위명 표기는 개정학칙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폐지된 교육대학원의 철학교육전공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수료생의 졸업 시 수여학위명 표기 방법은 종전 학칙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9. 이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경영대학원의 GMBA학과는 학과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한 학칙은 200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폐지와 변경된 학과(전공)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수료생에 대한 졸업시 학위명 표기 방법은 종전학칙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0. 이 개정학칙은 200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 학칙에도 불구하고 개정학칙에 의한다.

41. 이 개정학칙은 200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 학위수여자라도 개정된 학칙에 따라 학위명칭을 표기할 수 있다.

42. 이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6조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3. 이 개정학칙은 200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4. 이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여성학대학원, 통·번역대학원, 의료경영대학원을 폐원하고, 여성학대학원의 여성학과, 가족상담학과, 통·번역대학원의 일본어통·번역학과, 영어통·번역학과, 중국어통·번역학과, 의료경영대학원의 의료관리학과, 의료정보학과를 폐과하고, 정책대학원내 여성학과, 가

죽상담학과, 경영대학원내 MBA학과에 의료경영학전공을 신설한다.

② 이 개정학칙에 따라 여성학대학원, 의료경영대학원의 재적생(휴학생 포함) 및 수료생에 대한 학위명 표기방법은 종전 학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성학대학원, 의료경영대학원 학생이 경영대학원, 정책대학원의 신설 학과 및 전공으로 소속 변경을 희망할 경우 각 대학원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여성학대학원 및 의료경영대학원은 학칙 제22조(수업연한) ③항과 ⑤항에 의거 재학연한까지만 존치하고, 이후 수료생에 대해서는 정책대학원의 신설 학과와 경영대학원의 신설 전공으로 소속을 각각 변경한다.

④ 통·번역대학원은 학칙 제22조(수업연한)③항과 ⑤항에 의거 재학연한까지 존치한다.

⑤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의 현행 학·연·산 협동과정과 학과간 협동과정의 학과 및 입학정원을 [별표 1] 1. 일반대학원 학과 및 입학 정원 편성표에 포함하고, 학·연·산 협동과정 입학정원 2명과 학과간 협동과정 입학정원 16명을 석사과정 입학정원에 포함하여 입학정원을 408명으로 조정하고, 이를 학칙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⑥ 일반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의 현행 학과간 협동과정의 학과 및 정원을 [별표 1] 1. 일반대학원 학과 및 입학 정원 편성표에 포함하고, 학과간 협동과정 입학정원 6명을 박사과정 입학정원에 포함하여 입학정원을 200명으로 조정하고, 이를 학칙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3월 1일부터는 개정된 학칙에 따라 정원을 170명으로 감원하여 시행한다.

⑦ 대학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정원을 조정한다.

대학원	학위과정	입학정원		비고
		조정 전	조정 후	
일반대학원	박사	200	170	
일반대학원	석사	408	408	
교육대학원	석사	272	272	
경영대학원	석사	60	50	
정책대학원	석사	55	70	
유아교육대학원	석사	30	30	
예술대학원	석사	85	50	
스포츠산업대학원	석사	40	30	
연합신학대학원	석사	30	30	
지능형자동차대학원	석사	30	30	
여성학대학원	석사	25	0	
통·번역대학원	석사	35	0	
의료경영대학원	석사	25	0	
총 원	박사	200	170	
	석사	1,095	970	

45. 이 개정학칙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6. 이 개정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통합 및 폐지, 변경된 학과(전공)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수료생에 대해서는 종전학칙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능형자동차대학원의 이수학점 및 학위 수여자격 개정에도 불구하고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수료생에 대해서는 종전학칙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7. 이 개정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8. 이 개정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9. 이 개정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0. 이 개정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1. 이 개정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2. 이 개정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와 제36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폐지된 학과(전공)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수료생에 대해서는 종전 학칙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 이 개정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7조 제1호 교육대학원은 2012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폐지된 서비스경영학전공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수료생의 졸업 시 수여학위는 종전학칙에 의한다.

② 이 개정학칙 시행 전에 지능형자동차대학원으로 입학한 재학생(휴학생 포함)과 수료생의 이수학점, 수강학점, 학위 수여자격 등에 대해서는 종전 학칙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54. 이 개정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5.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폐과된 경영대학원 벤처창업학과와 정원과 재학생(휴학생 포함) 소속은 2014년 9월 1일부터 글로벌창업대학원 벤처창업학과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56. 이 개정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변경된 학과(전공)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수료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학칙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57. 이 개정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폐과된 전시컨벤션학과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수료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학칙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58. 이 개정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9. 이 개정학칙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변경된 학과(전공)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수료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학칙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60. 이 개정학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61. 이 개정학칙은 201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62. 이 개정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교육대학원 입학정원과 수여학위명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변경된 학과(전공)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수료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학칙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63. 이 개정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 및 제57조제2항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폐과된 학과(전공)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수료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학칙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64. 이 개정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5. 이 개정학칙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6. 이 개정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7. 이 개정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8. 이 개정학칙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69. 이 개정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변경된 학과(전공)의 재적생 및 수료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학칙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70. 이 개정학칙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71. 이 개정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개정학칙 시행 전에 일반대학원 예술치료학과에 입학한 재적생에게는 종전 학칙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36학점)과 수강학점(학기별 12학점 이내)을 적용한다.

72. 이 개정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재적생 및 수료생은 글로벌한국어문화교육학과 재적생 및 수료생으로 본다.

② 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폐지된 학과의 재적생 및 수료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학칙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이 유사 학과로 소속 변경을 희망할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73. 이 개정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2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 시행으로 명칭이 변경된 교육대학원 해당 전공의 재적생 및 수료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개정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의 재적생 및 수료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74. 이 개정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5. 이 개정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6. 이 개정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7. 이 개정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과 제36조 별표 2의 제 2-1호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무용교육전공의 재적생과 수료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78. 이 개정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 시행으로 융합공학대학원은 폐원, 지능형자동차공학과와 교통안전공학과는 폐과하고, 글로벌한국어문화교육학과는 한국어교육학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② 융합공학대학원 지능형자동차공학과 수료자는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③ 융합공학대학원 제적자 중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일반대학원의 유사한 학과로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학할 경우 일반대학원의 학점체계를 따른다.

④ 글로벌한국어문화교육학과 재적생 및 수료자는 한국어교육학과 재적생 및 수료자로 본다.

79. 이 개정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의 의학과 의용공학전공 재적생 및 수료자는 공학계열 의용공학과 재적생 및 수료자로 본다.
80. 이 개정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전기전자융합시스템공학과와 수료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8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2023학년도 이전에 스포츠산업대학원 스포츠경영학과, 레저스포츠학과, 운동처방학과와 유아교육대학원 유아영재교육학과에 입학한 재적생 및 수료자는 각각 스포츠융합과학대학원 글로벌스포츠마케팅학과, 스포츠융합콘텐츠학과, 건강운동관리학과와 유아교육대학원 유아통합교육학과에 재적생 및 수료자로 본다. 다만, 입학 당시의 대학원명과 학과명칭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이 개정 학칙 시행 전까지 3학기(1년 6개월) 이상의 학기를 이수한 재적생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한다.
82. 이 개정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3. 이 개정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24학년도 이전에 글로벌창업대학원 글로벌e-Business창업학과에 입학한 재적생 및 수료자는 비즈니스컨설팅학과에 재적생 및 수료자로 본다. 다만, 입학 당시의 학과명칭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84. 이 개정학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5. 이 개정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학과 폐지: 일반대학원 국제지역학과와 연합신학대학원 교회음악학과는 폐지한다.
② 이 개정학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제지역학과에 재적자 중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일반대학원의 유사한 학과로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86. 이 개정학칙은 202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87. 이 개정학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의학과의 이학석사 및 박사학위는 2026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88. 이 개정학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9. 이 개정학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0. 이 개정학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과 제36조 별표2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공학과 수료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1] 1. 일반대학원 학과 및 입학정원 편성표[대학원 학칙 제4조제1항(학과와 입학정원) 관련](개정 2008. 3. 1., 2008. 6. 25., 2009. 3. 1., 2009. 4. 29., 2009. 7. 1., 2010. 3. 1., 2011. 3. 1., 2012. 3. 1., 2014. 3. 1., 2014. 9. 1., 2015. 3. 1., 2016. 5. 24., 2016. 9. 1., 2017. 3. 1., 2017. 4. 28., 2018. 3. 1., 2019. 9. 1., 2022. 3. 1., 2023. 3. 1., 2025. 3. 1., 2027. 3. 1.)

(1) 석사과정

계열	학 과		입학정원
인문 사회	한국학	국어국문학과, 한국문화학과, 한국어교육학과(3개학과)	460명
	인문 사회	영어영문학과, 일본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철학과, 역사·고고학과, 신학과, 경영학과, 경제·소비자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관광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법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신문방송학과, 문헌정보학과, 경찰행정학과, 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학과, 중국학과, 영어교육학과, 미술사학과, 통·번역학과, 패션비즈니스학과(27개학과)	
자연 과학	통계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공중보건학과, 식품가공학과, 환경과학과,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9개학과)		
공학	건축학과, 화학공학과, 도시계획및교통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재료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로봇시스템공학과, 의용공학과 (10개학과)		
예·체능	음악학과, 미술학과, 미디어아트학과, 디자인학과, 체육학과, 예술치료학과 (6개학과)		
의학	의학과(1개학과)		
합계 (56개 학과)			

(2) 박사과정

계열	학 과		입학정원
인문 사회	한국학	국어국문학과, 한국문화학과, 한국어교육학과(3개학과)	170명
	인문 사회	영어영문학과, 일본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철학과, 역사·고고학과, 신학과, 경영학과, 경제·소비자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관광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법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신문방송학과, 문헌정보학과, 경찰행정학과, 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학과, 중국학과, 영어교육학과, 미술사학과, 통·번역학과, 패션비즈니스학과, 창업학과, 글로벌융합경영학과(29개학과)	
자연 과학	통계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공중보건학과,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환경과학과, 식품가공학과, 약학과(9개학과)		
공 학	건축학과, 화학공학과, 도시계획및교통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재료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의용공학과(9개학과)		
예·체능	체육학과, 음악학과, 미술학과, 예술치료학과, 디자인학과(5개학과)		
의 학	의학과(1개학과)		
합계 (56개 학과)			

2. 특수대학원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편성표(개정 2008. 3. 1., 2009. 3. 1., 2009. 7. 1., 2010. 3. 1., 9. 13., 2011. 3. 1., 2013. 3. 1., 2014. 3. 1., 2014. 9. 1., 2014. 12. 29., 2015. 3. 1., 2015. 9. 1., 2016. 5. 24., 2016. 9. 1., 2017. 3. 1., 2018. 9. 1., 2018. 10. 17., 2019. 3. 1., 2019. 9. 1., 2020. 3. 1., 2020. 9. 1., 2022. 3. 1., 2023. 3. 1., 2024. 3. 1., 2025. 3. 1., 2025. 3. 1.)

2-1. 교육대학원

과정	전공	입학정원
석사과정	평생교육및인재개발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교육심리및공학전공, 다문화교육전공, 청소년상담전공, 진로진학상담전공, 영어교육전공, 전산교육전공, 간호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145명
	합계 (13개 전공)	

2-2. 경영대학원

과정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석사과정	MBA학과	경영학	50명
		빅데이터학	
		회계학	
		관광경영학	
		국제통상학	
		의료경영학	
		ESG경영학	
	GMBA학과		50명
	2개 학과		

2-3. 정책대학원

과정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석사과정	행정학과		45명
	사회복지학과		
	여성학과		
	가족상담학과		
	이민다문화사회학과		
	산업정책학과		
	6개 학과		45명

2-4. 여성학대학원 (폐원)

2-0-3-22 학칙

2-5. 예술대학원

과정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석사과정	음악학과		40명
	미술학과		
	무용학과		
	연극뮤지컬학과		
	4개 학과		40명

2-6. 통·번역대학원 (폐원)

2-7. 연합신학대학원

과정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석사과정	신학과		40명
	기독교가족상담학과		
	2개 학과		40명

2-8. 스포츠융합과학대학원

과정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석사과정	글로벌스포츠마케팅학과		30명
	스포츠융합콘텐츠학과		
	건강운동관리학과		
	태권도교육학과		
	4개 학과		30명

2-9. 의료경영대학원 (폐원)

2-10. 유아교육대학원

과정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석사과정	유아교육학과		40명
	유아통합교육학과		
	2개 학과		40명

2-11. 융합공학대학원 (폐원)

2-12. 글로벌창업대학원

과정	학과명	전공명	입학정원
석사 과정	벤처창업학과		45명
	비즈니스컨설팅학과		
	2개 학과		45명

[별표 1-1] 일반대학원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및 학위명(삭제 2023. 3. 1.)(신설 2026. 3. 1.)

과정	학과명칭	입학정원	학위명
석사과정	행정학과	15명	행정학석사

[별표 1-2] 정책대학원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및 학위명(신설 2013. 3. 1.)(삭제 2026. 3. 1.)

[별표 1-3] 글로벌창업대학원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정원 및 학위명(신설 2019. 9. 1.)(삭제 2026. 3. 1.)

[별표 2] 1. 대학원 수여학위명(개정 2008. 3. 1., 2008. 10. 21., 2009. 3. 1., 2009. 4. 29., 2009. 7. 1., 2010. 3. 1., 2011. 3. 1., 2011. 9. 1., 2013. 3. 1., 2014. 3. 1., 2014. 9., 2015. 3. 1., 2016. 5. 24., 2016. 9. 1., 2017. 3. 1., 2017. 4. 28., 2018. 3. 1., 2018. 9. 1., 2018. 10. 17., 2019. 3. 1., 2019. 9. 1., 2022. 3. 1., 2023. 3. 1., 2024. 3. 1., 2024. 3. 1., 2025. 3. 1., 2025. 9. 1., 2027. 3. 1.)

학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국어국문학	문학석사	문학박사
영어영문학	문학석사	문학박사
일본학	일본학석사	일본학박사
교육학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유아교육학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영어교육학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철학	철학석사	철학박사
역사·고고학	문학석사	문학박사
미술사학	문학석사	문학박사
신학	신학석사	신학박사
경영학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경제·소비자학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무역학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회계학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관광경영학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경영정보학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법학	법학석사	법학박사
심리학	심리학석사	심리학박사
행정학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학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경찰행정학	경찰학석사	경찰학박사
신문방송학	언론학석사	언론학박사
사회학	사회학석사	사회학박사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석사	문학박사
문예창작학	문학석사	문학박사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박사
한국어교육학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전공) (Major in Korean Studies)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중국어학	중국학석사	중국학박사
한국문화학	문학석사	문학박사
통·번역학	문학석사	문학박사
패션비즈니스학	패션비즈니스학석사	패션비즈니스학박사
창업학과		창업학박사
글로벌융합경영학과		경영학박사
통계학	이학석사	이학박사
화학	이학석사	이학박사
생물학	이학석사	이학박사
공중보건학	보건학석사	보건학박사
식품가공학	이학석사	이학박사
환경과학	환경학석사	환경학박사
식품영양학	이학석사	이학박사
간호학	간호학석사	간호학박사
약학	약학석사	약학박사
건축학 (건축공학전공)	공학석사	공학박사
(건축학전공) (실내환경디자인전공) (융합건축학전공)	건축학석사	건축학박사
(생태조경학전공)	조경학석사	조경학박사
화학공학	공학석사	공학박사
도시계획및교통공학	공학석사	공학박사
컴퓨터공학	공학석사	공학박사
전자전기공학	공학석사	공학박사
재료공학	공학석사	공학박사
토목공학	공학석사	공학박사
기계공학	공학석사	공학박사
로봇시스템공학과	공학석사	
의용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음악학	음악학석사	음악학박사
미술학	미술학석사	미술학박사
디자인학 (시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공예디자인전공) (융합디자인전공)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박사
(패션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학석사	패션디자인학박사

2-0-3-26 학칙

2-2. 경영대학원

학 과	전 공	수여학위
MBA학과	경영학	경영학석사(경영학)
	빅 데이터학	경영학석사(빅 데이터학)
	회계학	경영학석사(회계학)
	관광경영학	경영학석사(관광경영학)
	국제통상학	경영학석사(국제통상학)
	의료경영학	경영학석사(의료경영학)
	ESG경영학	경영학석사(ESG경영학)
GMBA학과		경영학석사(GMBA)

2-3. 정책대학원

학과	전공	수여학위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사회복지학)
여성학과		문학석사(여성학)
가족상담학과		문학석사(가족상담학)
이민다문화사회학과		사회학석사(이민다문화사회학)
산업정책학과		정책학석사

2-4. 여성학대학원 (삭제 2010. 3. 1.)

※ 재학생 및 수료생은 종전 학칙의 수여학위명에 따른다.

2-5. 예술대학원

학과	전공	수여학위
음악학과		음악학석사 (관현악, 성악, 작곡, 피아노, 오르간, 합창지휘, 오케스트라지휘, 반주)
미술학과		미술학석사(회화, 도예, 패션디자인)
무용학과		무용학석사(무용)
연극뮤지컬학과		연극학석사(연극뮤지컬)

2-6. 통·번역대학원 (삭제 2010. 3. 1.)

※ 재학생 및 수료생은 종전 학칙의 수여학위명에 따른다.

2-7. 연합신학대학원(개정 2025. 9. 1.)

학과	전공	수여학위
신학과		신학석사(신학)
기독교가족상담학과		기독교가족상담학석사

2-8. 스포츠융합과학대학원

학과	전공	수여학위
글로벌스포츠마케팅학과		체육학석사(글로벌스포츠마케팅)
스포츠융합콘텐츠학과		체육학석사(스포츠융합콘텐츠)
건강운동관리학과		체육학석사(건강운동관리)
태권도교육학과		체육학석사(태권도교육)

2-9. 의료경영대학원 (삭제 2010. 3. 1.)

※ 재학생 및 수료생은 종전 학칙의 수여학위명에 따른다.

2-10. 유아교육대학원

학과	전공	수여학위
유아교육학과		교육학석사(유아교육)
유아통합교육학과		교육학석사(유아통합교육)

2-11. 융합공학대학원 (폐원)

2-12. 글로벌창업대학원

학 과	전 공	수여학위
벤처창업학과		창업학석사
비즈니스컨설팅학과		비즈니스컨설팅학석사

[별지 1] 학술학위(석사-학위논문)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학과(전공)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제출된 아래의 논문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 문 제 목 :

년 월 일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장 ○○박사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계 명 대 학 교 총 장 ○○박사 ○ ○ ○

학위등록번호 : 계명대 (석)

[별지 1-2] 학술학위(석사-학위논문 대체) (신설 2017. 9. 1.)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학과(전공)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위수득의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 학 석사의 자격
을 인정함.

년 월 일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장 ○○박사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계 명 대 학 교 총 장 ○○박사 ○ ○ ○

학위등록번호 : 계명대 (석)

[별지 2] 전문학위(석사)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 생

학과(전공)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제출된 아래의 논문이(작품심사결과 또는 논문대체과목 이수 결과) 대학원위원회
의 심사에 통과하여 ○○학 석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 문 제 목 :

년 월 일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장 ○○박사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전공)학위를 수여함.

계 명 대 학 교 총 장 ○○박사 ○ ○ ○

학위등록번호 : 계명대 (석)

[별지 3] 학술학위(박사)

박사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학 과

전 공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제출된 아래의 논문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학 박사학위의 자격
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 문 제 목 :

년 월 일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장 ○○박사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계 명 대 학 교 총 장 ○○박사 ○ ○ ○

학위등록번호 : 계명대 (박)

[별지 4] 명예박사학위

명박 제 호

학 위 기

국 적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_____에 크게 공헌을 하였으므로 계명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명예 ○○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장 ○○박사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계 명 대 학 교 총 장 ○○박사 ○ ○ ○

학위등록번호 : 계명대 (명박)